

제360회 정례회
2017. 11. 23.(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01일

3.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 위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 (현) 수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16.07.19~'17.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예 산 액 : 488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사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4.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개요

-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민간위탁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 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인지력·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1.21.부터 시행됨.
-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의 주요사무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사무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맞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민간위탁 실시(위탁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연속성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등의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 및 매년 종합감사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명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관련규정 발췌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략)

-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 ⑦ (생략)

제41조(위임·위탁) ① (생략)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